

위촉직 채용 규정

- 목 차 -

제1장 총 칙	157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임용의 원칙	
제4조 계약서의 작성	
제5조 계약의 내용	
제6조 급여	
제7조 계약책임자 조치사항	
제8조 인사주관부서 조치사항	
제9조 계약의 해지	
제10조 기타	
부 칙	159
① (시행일)	
② (경과조치)	

위촉직 채용 규정

2005. 04. 06 제정 2006. 02. 14 개정
2007. 03. 22 개정 2011. 09. 06 개정
2013. 12. 23 개정 2015. 11. 09 개정
2017. 12. 22 개정 2018. 02.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ECO융합섬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 4항에 의거 연구원 위촉직의 채용 및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09>

제2조(용어의 정의) 위촉직이라 함은 연구·용역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18.02.28>

제3조(임용의 원칙) ① 위촉직 채용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인사부서와 채용적법성 및 예산을 협의한 후 채용사유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3.12.23>

② 위촉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제11조②항과 제12조를 준용하여 채용한다.<개정 13.12.23, 18.02.28>

③ 삭제<개정 18.02.28>

④ 삭제<개정 18.02.28>

제4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서는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하고 인사부서와 위촉직 직원이 각 1통씩 보관한다.<개정 18.02.28>

② 소속부서장은 위촉직의 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18.02.28>

제5조(계약의 내용) ①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18.02.28>

1. 계약기간
2. 근무시간
3. 계약금액
4.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계약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 17.12.22, 18.02.28>

제6조(급여) ①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별표 1” 연봉계약서를 따른다.<개정 11.09.06, 18.02.28>

②제1항에 의한 월급여는 연봉을 월할 균등 지급한다.<개정 11.09.06>

③계약책임자는 위촉직 채용 시 신규는 보수규정 제9조 재계약은 보수규정 제10조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총액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할 수 있다.<개정 11.09.06>

④비상근 위촉직의 급여는 해당총액의 176분의 1에 근무시간을 곱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⑤제1항에 정한 급여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18.02.28>

⑥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8.02.28>

제7조(소속부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개정 18.02.28>

②소속부서장은 계약기간 종료일 30일전에 계약만료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8.02.28>

③제5조 2항에 의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재계약 30일전에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8.02.28>

제8조(인사부서 조치사항) ①인사부서는 계약기간 만료예정인 위촉직의 계약기간 종료일 45일전까지 해당자의 계약만료를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8.02.28>

②계약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위촉직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한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자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1.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 2.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 3.계약 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 4.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5.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6.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10조 (기타) ①국민연금, 의료보험,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준용하되,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1.09.06, 18.02.28>

부 칙

(2005.04.06), (2006.02.14), (2007.03.22), (2011.09.06), (2013.12.23)
(2015.11.09), (2017.12.22.), (2018.0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3.12.23, 14.06.25, 15.11.09, 18.02.28, 19.02.26>

연 봉 계 약 서

ECO융합섬유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원장은 위촉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 원 장 :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 위 촉 직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시간)

평일(월~금) 근무시간	점심시간	휴 무
9시 ~ 18시	12시 ~ 13시	토요일

제4조(업무내용) 위촉직()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 업무내용은 원장이 위촉직()에게 위탁하는
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등) 계약금액 총액은 금 원으로 한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 만원)

구 분		총 지급액	매월 지급액	비 고
임금구성	기본급			기본급은 별도 수당을 제외한 모든 임금 포함
	식 비			
임금지급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 계약금액 이외의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 ()를 지급할 수 있다.

